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25 발의연월일: 2024. 8. 7.

발 의 자: 박용갑·한준호·강유정

한민수 · 박홍배 · 권칠승

문진석 · 장철민 · 문금주

이용우 • 추미애 • 조승래

박 정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, 지자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는 전 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 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발생도 급증하고 있는데, 전기자동차는 충전 중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와 폭발 등으로 화재진압이 매 우 어려운 실정임. 특히,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와 소방인력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지만 현행법은 화재 발생시 소방에 필요한 시 설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셔터,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옥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제13항 및 제16조제1항 제2호 각각 신설).

법률 제 호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셔터, 소화수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필요한 설비(이하 "소방설비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
- 2. 제11조의2제13항을 위반하여 소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방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1조의 2제13항에 따른 소방설비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	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
전용주차구역 등) ① ~ ⑫ (생	전용주차구역 등) ① ~ ⑫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
	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제1항 각
	호에 따른 시설의 옥내에 설치
	하는 경우에는 방화셔터, 소화
	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소방에 필요한 설비(이하 "소
	방설비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
	<u>한다.</u>
제16조(과태료) ① 제11조의2제9	제16조(과태료) ① <u>다음 각 호의</u>
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	<u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
<u>를 한</u>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	
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.
<u> <신 설></u>	1.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
	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
<u><신 설></u>	2. 제11조의2제13항을 위반하여
	소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
	<u>자</u>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